

야간근무지침

야간 안전점검 (22:00 ~ 06:00)

화 순 중 앙 요 양 원

● 야간근무 목적

야간근무자가 매일 수급자의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,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킨다.

○ 야간 근무지침

1. (목적)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. (적용)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.
 - 1) 야간근무자는 기관의 종사자로 야간시간대(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)에 간호사,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.
 - 2)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.
3. (근무준비)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.
 - 1) 입소현황,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
(와상환자,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)
 - 2)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
 - 3)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(소방관서, 의료기관) 확인
 - 4)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: 마스터키 등
4. (준비확인)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.
 - 1) 확 인 자 : 시설장(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순서)
 - 2) 보 고 자 : 야간근무자
 - 3) 확인방법 : 야간근무자는 야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.
5. (야간근무) 야간근무자는 안전점검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야간점검을 2시간에 한번씩 실시하고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.
 - 1) 야간점검시 특이사항은 야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.
 - 2) 확인자는 야간근무일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치한다.

구분	안전점검 내용
수급자 확인	수급자 상태 (응급상황 등), 침대난간 안전상태, 배회 어르신 수면상태, 침구류는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
시설안전 점검	출입구 잠금장치, 주방잠금장치, 창문개폐, 소화기구 및 비상구, 유도등 등
전기· 소방시설	소화기구 정위치, 소화시설관리 여부 및 작동상태 식당 가스누출상태 및 전기콘센트 안전상태
기타사항	비상연락망, 대피경로, 마스터 키등 실내조명 상태(취침등 및 소등) 및 온도, 습도 상태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

6. (초동대처) 야간점검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
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,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
실시하여야 한다.
7. (당직점검)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.
8. 야간 필수인력 배치하여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(요양보호사, 간호사,
간호조무사)을 배치하고,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.
9.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.